

교육과정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 각 학과의 전공 및 교양과목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한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연구·조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현장중심 전공 교육과정 편성,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초 교양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,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년도별 교육과정 편성·개편 기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의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한다.

④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위원)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7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연구비)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 1~3호, 제4조 위원의 임기 2년)